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검 토 보 고

〈기부 대 양여 재산의 동등 교환 규정 마련 등〉  
■ 박선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86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총괄 검토의견 .....        | 4  |
| 1. 제정안의 내용 및 구성 .....     | 4  |
| 2. 총괄 검토 .....            | 9  |
| IV. 조문별 검토의견 .....        | 11 |
| 1. 이전사업의 방식 및 지원 .....    | 11 |
| 2.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특례 ..... | 16 |
| 3. 종전부지 활용사업을 위한 지원 ..... | 20 |
| 4. 부칙 검토 .....            | 24 |
| ※ 참고자료                    |    |
| 1. 제정안 관련 관계부처 의견 .....   | 25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선원 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8.
3. 회부연월일 : 2025. 9. 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개발 제한을 받아왔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생활 불편을 겪어왔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새롭게 통합·이전할 부지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등의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을 도입했으나, 자산 가치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는 등 군사시설 이전을 지원할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환경 정비, 개발 지연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자산 평가 방식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효율적인 군사시설 통합·이전과 지역 발전을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과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현대화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 부지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며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은 동등하게 교환함(안 제6조)
- 다. 기부재산 가액이 양여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양여재산 가액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기부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실투입비 이상이어야 하고 양여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제외함(안 제7조)
- 라. 이전사업의 단계별 시행을 위해, 최종 합의각서 체결 이전 조성이 완료된 대체시설에 대해 기부 대 양여를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함 (안 제8조).
- 마. 사업시행자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함 (안 제11조).

바.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인가·허가 등에 특례를 부여하고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국고 보조금 보조율 인상 지원 등의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함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사. 종전부지 활용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 및 인가·허가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안 제17조부터 안 제27조까지).

### Ⅲ. 총괄 검토의견

#### 1. 제정안의 내용 및 구성

□ 박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시가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도심지 내에 위치하는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총 4장 27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제정안의 전반적인 체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up>1)</sup>

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음.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
| 제1장 총칙                 |                  | 제14조                  | 인가·허가 등의 의제           |
| 제1조                    | 목적               | 제15조                  | 토지수용                  |
| 제2조                    | 정의               | 제16조                  | 부담금의 감경               |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                       |
|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                  | 제17조                  |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
| 제4조                    |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 제18조                  | 계약방법의 특례              |
| 제5조                    | 이전후보지의 선정        | 제19조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
| 제6조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제6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                       |
| 제7조                    | 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공고 | 제20조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 제8조                    | 이전부지의 선정         | 제21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
| 제3장 이전사업의 방식 및 지원      |                  | 제22조                  | 군공항이전사업단              |
| 제9조                    | 이전사업의 방식 등       | 제7장 종전부지의 처리          |                       |
| 제10조                   | 부담금의 면제          | 제23조                  | 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
|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                  | 제24조                  | 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
| 제11조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 보칙                    |                       |
| 제12조                   |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 제2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제13조                   |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                       |                       |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sup>2)</sup>을 참고하여  
구성한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도심지의 확장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하여 군사기지 이전을 활성화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임.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        |                     |
|--------------------------|------------------------|--------|---------------------|
| 제1조                      | 목적                     | 제21조   |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
| 제2조                      | 정의                     | 제22조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3조   | 고용안정사업 등            |
| 제4조                      | 삭제                     | 제24조   | 사회기반시설 지원           |
| 제5조                      | 삭제                     | 제25조   |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
| 제6조                      | 삭제                     | 제26조   |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
| 제7조                      | 종합계획의 수립               | 제27조   |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
| 제8조                      |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 제28조   |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
| 제9조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제29조   | 인·허가등의 의제           |
| 제10조                     | 사업시행자                  | 제30조   | 공공시설의 귀속·양도         |
| 제11조                     | 사업의 시행승인 등             | 제31조   | 토지 등의 수용            |
| 제12조                     |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 제32조   | 조성토지의 공급            |
| 제13조                     |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 제33조   | 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
|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 제34조   | 사업비 지원과 조성          |
| 제15조                     |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 제34조의2 | 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
| 제16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 제35조   |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 제17조                     |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 제36조   | 권한의 위임              |
| 제18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특례      | 제37조   |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 제19조                     |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 제38조   | 청문                  |
| 제20조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 제39조   | 과태료                 |

## <제정안의 구성>

| 조문                | 주요내용                                                                                                                 |
|-------------------|----------------------------------------------------------------------------------------------------------------------|
| 제1장 총칙            |                                                                                                                      |
| 제1조(목적)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종전부지 활용사업,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 현대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제2조(정의)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군사기지 이전사업, 이전부지, 종전부지 등 정의 규정 마련함                                                                     |
| 제3조(이전사업의 시행자)    |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공익사업시행자 등을 사업의 시행자로 하며, 종전부지에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이전사업을 제외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제외한 이전사업, 지원사업, 종전부지 활용사업에 관하여 동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 제2장 이전사업의 방식 및 지원 |                                                                                                                      |
|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 ○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기부·양여 재산이 동등하게 교환되도록 함                                          |
| 제7조(기부 및 양여재산 평가) | ○ 기부재산과 양여될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전주변지역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 제8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 ○ 사업구역을 분할하여 이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최종 합의각서에는 분할하여 추진한 이전사업도 포함하도록 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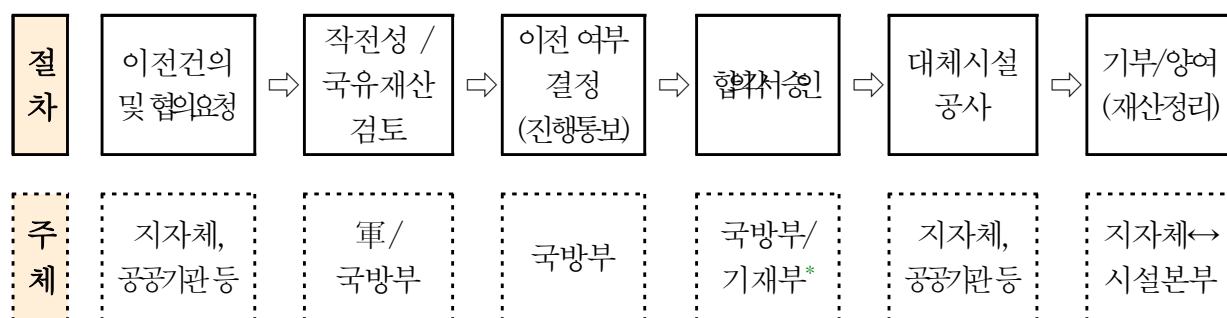
| 조문                          | 주요내용                                                                                    |
|-----------------------------|-----------------------------------------------------------------------------------------|
| 제9조(토양오염 처리의 특례)            | ○ 토양오염을 정화할 경우 국방예산으로 실투입비용을 지급하며, 기부 대 양여 전이라도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시설 철거를 승인하도록 함              |
| 제10조(이전사업 보고)               | ○ 국방부장관이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활용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과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 제3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특례        |                                                                                         |
|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 ○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제12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 ○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인·허가등을 의제할 수 있도록 정함                                              |
| 제13조(조세 감면 및 부담금 등의 면제)     | ○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안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조세를 감면하고, 이전사업·지원사업·종전부지 활용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과 인·허가 수수료 등을 면제함 |
| 제14조(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 ○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함                                                              |
| 제15조(계약방법의 특례)              |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지원사업의 경우 이전주변지역 사업자와의 공동입찰을 우대할 수 있음                                    |
| 제16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 ○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음                                       |
| 제4장 종전부지 활용사업을 위한 지원        |                                                                                         |
| 제17조(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   | ○ 종전부지와 이전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 내 훼손지의 원상복구 의무와 임대주택 건설·공급을 면제함               |
| 제18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에 관한 특례)    | ○ 종전부지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제19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 ○ 이전주변지역에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 총허용량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함 |

| 조문                         | 주요내용                                                                                |
|----------------------------|-------------------------------------------------------------------------------------|
| 제20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 ○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개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 제21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 ○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특례)    | ○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 제23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 ○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 ○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우선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록건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 제25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 ○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교육·문화·관광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동 지역으로 이전되는 교육·문화·관광 시설을 우선 인·허가하도록 함 |
| 제26조(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        | ○ 이전사업, 종전부지 활용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지방채 발행과 출자 관련 특례를 규정함                       |
| 제27조(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준용규정) | ○ 종전부지 활용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한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준용규정을 마련함                                     |
| 부칙                         |                                                                                     |
| 제1조(시행일)                   |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제2조(사업대상에 관한 적용례)          | ○ 이 법 시행 이후 국방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 2. 총괄 검토

- 기부 대 양여에 의한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과거 외곽지역에 건설 하였던 군사시설이 도심지 확장에 따라 도심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군사작전에 적합한 이전(移轉)부지에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군사 시설을 이전시키고, 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함으로써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낙후 지역 개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군사시설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절차]



- 그런데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간 가치 차이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현재 진행 중인 33건<sup>3)</sup>의 이전사업에서는 합의각서 체결 후 인·허가 지연, 공사기간 연장, 지자체 양여부지 개발사업 변경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례<sup>4)</sup>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3) 사업자선정/인허가단계(2건), 대체시설 설계·공사단계(24건), 기부채납 및 양여단계(7건)

- 이에 제정안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고 두 재산 간 차액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군사시설의 이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종전부지 인근 주민들과 이전부지 인근 주민들이 감내하는 권리제약을 고려한 특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제정안은 군사시설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므로, 기부대 양여 재산 평가, 차액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에 적용하는 특례 규정 등이 「국유재산법」, 「조세특례제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일반법 체계와 정합성을 이루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봄.

---

4) ‘인천시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이전사업’이 ‘23년 합의각서 체결 후 민간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 지연 중이며, ‘안양시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이 이전부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심의기간 소요로 지연된 바 있음

## IV. 조문별 검토의견

### 1. 이전사업의 방식 및 지원

#### 가. 개 관

- ☐ 이전사업의 방식을 기부 대 양여로 정하고 기부·양여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과 두 재산 간 차액을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보고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나. 제정안 조문 및 주요내용

| 조항                | 주요내용                                                                                                           |
|-------------------|----------------------------------------------------------------------------------------------------------------|
| 제2장 이전사업의 방식 및 지원 |                                                                                                                |
|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 ○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기부·양여 재산이 동등하게 교환되도록 함                                   |
| 제7조(기부 및 양여재산 평가) | ○ 기부재산과 양여될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 제8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 ○ 사업구역을 분할하여 이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최종 합의각서에는 분할하여 추진한 이전사업도 포함하도록 함                                                 |
| 제9조(토양오염 처리의 특례)  | ○ 토양오염을 정화할 경우 국방예산으로 실투입비용을 지급하며, 기부 대 양여 전이라도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시설 철거를 승인하도록 함                                     |
| 제10조(이전사업 보고)     | ○ 국방부장관이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활용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과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 다. 검토의견

### 1) 이전사업의 방식(안 제6조)

- 안 제6조는 이전사업의 방식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sup>5)</sup>을 규정하면서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이 동등하게 교환되도록 하고 있음.
-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가치 차이로 인해 사업참여가 저조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두 재산의 동등한 교환을 보장함으로써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유재산법」<sup>6)</sup>은 기부재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평가 기준 마련 등(안 제7조)

#### ①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평가 기준 마련

- 안 제7조는 기부재산의 가액은 이전부지 사업에 실제 투입된 모든 금액을 고려한 감정평가액(사업자가 투입한 비용 이상이어야 함)으로,

---

5)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양여재산의 가액은 종전부지 사업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이전부지 재산은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이상으로 감정평가하고, 종전부지 재산은 도시계획 변경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도록 하여 사업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sup>7)</sup> 및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sup>8)</sup>에 따르면 기부재산은 실제 취득원가를 고려한 감정평가액으로, 양여재산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의 시가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음.

## ②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간 차액 처리 기준 마련

□ 제정안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평가하여 ‘기부재산>양여재산’인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기부재산<양여재산’인 경우 차액을 이전부지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7)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0조(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 ③ 협의주관기관은 대체시설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기부 및 양여재산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양여재산의 확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고시 등)이 완료된 후 시가방식의 감정평가를 각각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평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며, 감정평가비용은 협의주관기관이 부담한다.

8)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3조(기부 및 양여 재산평가) ③ 대체시설 완공 및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재산평가를 할 경우,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반영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방식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부재산 범위 내에서 양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sup>9)</sup> 기부재산보다 양여재산의 가액이 클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 따라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 받아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있음.<sup>10)</sup>

□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기본 틀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받음으로써 국가 재정 투입 없이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것임.

만약 양여재산 가액이 기부재산 가액을 초과하였는데 그 차액을 세입 조치하지 않고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게 된다면 국가의 재산이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투입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므로, 국가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봄.

---

9)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10)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1조(양여) ①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 범위 내에서 양여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경우 협의대상자는 9호, 10호의 서류는 추후 대체시설 완공 후 제출하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제1호의 경우 대체시설의 기부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2호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한다.

1. ~ 12. (생략)

② 시설관리자는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대체시설 제공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결과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한편, 양여재산의 가액에서 기부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이전부지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 3) 기부 및 양여의 특례(안 제8조)

- 안 제8조는 이전사업 시행 시 사업구역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된 이전사업이 완료된 경우 지체없이 기부재산 가액 범위 내의 종전부지를 양여하도록 하며, 최종 합의각서에는 분할된 이전 사업을 포함하여 기부·양여재산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 사업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비용을 선투입한 후 사업 완료 시점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는 체계임. 이에 제정안은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개발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투입비용에 대한 이익을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사업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군사시설의 통합 운영 및 군사작전 수행 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분할사업의 시작시기와 완료시기의 차이로 인한 기부·양여재산 평가액이 달라질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②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 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2. 이 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특례

### 가. 개 관

- 이 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된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

### 나. 제정안 조문 및 주요내용

| 조 항                          | 주요내용                                                                                     |
|------------------------------|------------------------------------------------------------------------------------------|
| 제3장 이 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특례        |                                                                                          |
| 제11조(이 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 ○ 이 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제12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 ○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가 완료된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 제13조(조세 감면 및 부담금 등의 면제)      | ○ 이 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안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조세를 감면하고, 이전사업·지원사업·종전부지 활용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과 인·허가 수수료 등을 면제함 |
| 제14조(이 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 ○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함                                                               |
| 제15조(계약방법의 특례)               |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지원사업의 경우 이 전주변지역 사업자와의 공동입찰을 우대할 수 있음                                    |
| 제16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 ○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 전주변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음                                       |

## 다. 검토의견

### 1) 인가·허가 등의 의제(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국방부장관이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완료된 경우 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인·허가 등의 의제는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등록 등 관련되는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 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각각 받도록 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신속한 시행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음.<sup>12)</sup>
- 인·허가 등의 의제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될 수 있지만, 개별 인·허가 제도는 해당 개별법의 취지에 따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규제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기관들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도 있음.

---

12)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년), p.388.

## 2) 조세 감면 및 부담금 등의 면제(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부담금의 면제’ 조항을 참조한 것으로 보임.<sup>13)</sup>

□ 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개별 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sup>14)</sup>」, 「지방세특례제한법<sup>15)</sup>」에 직접 규정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담금의 면제에 대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sup>16)</sup>

1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14)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1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부담금 등의 면제 규정은 각 부담금등의 근거법령에서 개별법의  
입법 취지 및 관리·보전의 공익적 목적, 타 분야와의 형평성,  
면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봄.

-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종전부지 활용사업을 위한 지원

#### 가. 개 관

☐ 종전부지 활용사업과 관련된 특례를 정하고자 함(안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

#### 나. 제정안 조문 및 주요내용

| 조 항                       | 주요내용                                                                                    |
|---------------------------|-----------------------------------------------------------------------------------------|
| 제4장 종전부지 활용사업을 위한 지원      |                                                                                         |
| 제17조(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 | ○ 종전부지와 이전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 지역의 원상복구 의무와 임대주택 건설·공급을 면제함                  |
| 제18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에 관한 특례)  | ○ 종전부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제19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 ○ 이전주변지역에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 총허용량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함 |
| 제20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 ○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개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 제21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 ○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특례)   | ○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 제23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 ○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조항                         | 주요내용                                                                                |
|----------------------------|-------------------------------------------------------------------------------------|
|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 ○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우선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록건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 제25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 ○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교육·문화·관광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동 지역으로 이전되는 교육·문화·관광 시설을 우선 인·허가하도록 함 |
| 제26조(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        | ○ 이전사업, 종전부지 활용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지방채 발행과 출자 관련 특례를 규정함                       |
| 제27조(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준용규정) | ○ 종전부지 활용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준용규정을 마련함                                      |

## 다. 검토의견

###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충량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17)은 광역도시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계획 수립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sup>18)</sup>은 시·도지사도 하여금 시·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2) 공장 신설에 관한 특례(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를 조성할 경우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신설·증설되는 공장은 공장 총허용량과 별도로 배정하려는 것임.

---

18)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장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5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3-5-2. 해제가능총량의 설정

(1) 입안권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하 "해제가능총량"이라 한다)의 설정과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등을 받아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자문을 통해 해제가능총량의 상한(上限) 및 사용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 해제가능총량은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추정된 목표연도까지의 개발수요에 근거하여 설정하되 개발수요가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발전전략, 공간구조, 가용토지 현황 및 녹지체계 유지·관리방안 등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해제가능총량은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이하 "권역별 해제가능총량"이라 한다)과 국책사업(국가의 중요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을 말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해제가능총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권역별 해제가능총량은 광역계획권 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립권자 간에 합의의 통해 시·도 단위(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시·군 단위)로 재배분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되는 면적만큼을 이미 해제된 면적과 상계하여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잔여 해제가능총량을 재산정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1. (2)의 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제정안은 종전부지 또는 이전주변지역에 공장을 신설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3)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등(안 제21조)

- ☐ 안 제21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sup>19)</sup>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학교를 이전·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학교의 신설 등이 제한되어 있는 종전부지에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1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부칙 검토

##### 가. 개 관

- ☐ 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음(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나. 제정안 조문 및 주요내용

| 조항                | 주요내용                                    |
|-------------------|-----------------------------------------|
| 부칙                |                                         |
| 제1조(시행일)          |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제2조(사업대상에 관한 적용례) | ○ 이 법 시행 이후 국방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 다. 검토의견

- ☐ 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대상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법 시행 후 국방부장관이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사업부터 동 법을 적용하도록 함.
- ☐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제정안의 내용은 기부 대 양여 제도 전반의 개정과 하위법령 정비를 수반하므로 시행일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참고자료

### 1. 제정안 관련 관계부처 의견

| 구분                                     | 부처 의견 |                                                                                                                                                                       |
|----------------------------------------|-------|-----------------------------------------------------------------------------------------------------------------------------------------------------------------------|
| 기부재산<br>평가<br>(안 제7조)                  | 국방부   | ○ 사업시행자가 실제 투입한 비용 이상으로 기부재산을 평가한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절감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고,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도 감정평가를 통해 통제할 수 없으므로 감정평가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
|                                        | 기획재정부 | ○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는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재산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비용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 양여재산<br>평가<br>(안 제7조)                  | 국방부   | ○ 사업계획 반영 전 도시·군관리계획 기준으로 토지평가 시, 국유재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결과 세입(기부를 초과하는 양여가액) 재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
|                                        | 기획재정부 | ○ 양여재산 가액 산정 시 국유재산 헐값 양여 논란 방지를 위해 2017년부터 변경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가치평가 중이라는 의견임. <sup>20)</sup>                                                                          |
| 기부재산<br>·양여재산<br>차액<br>처리기준<br>(안 제7조) | 국방부   | ○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 사업비 절감 및 양여부지 가치 제고를 통한 수익 창출 노력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고도 제한·항공기 소음 등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달리 통상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는 입장임 |
|                                        | 기획재정부 | ○ 차액보전 의무화 시, 대체시설 사업비 절감 및 양여부지 가치제고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압축재배치·기존 군부대 내 이전 등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군공항 이전 등 사회적비용이 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특별법을 통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규정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구분                      | 부처 의견       |                                                                                                                                                                                                               |
|-------------------------|-------------|---------------------------------------------------------------------------------------------------------------------------------------------------------------------------------------------------------------|
| 이전사업<br>분할추진<br>(안 제8조) | 국방부         | <p>○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부대의 임무수행 및 생활은 일부 시설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당초 1개의 사업으로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한 사전절차를 무용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선 양여를 허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고려할 필요가있고, 만약 임무수행에 제한이 없어 분리 실시할 경우라도 별개의 사업으로 재산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p> |
| 인·허가<br>의제<br>(안 제12조)  | 국방부         | <p>○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필요한 항목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조항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는 필요하지 않은 인·허가 * 등으로 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봄</p> <p>* 도시개발구역(안 2호), 택지개발지구(안 3호), 산업단지(안 4호), 관광단지(안 6호) 등</p>                   |
|                         | 문화체육<br>관광부 | <p>○ 안 제6호는 관광개발계획과 관련한 내용으로 군사시설 이전의 인·허가 의제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제11호의 체육시설은 시·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환경·교통·주민을 고려한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므로 삭제 필요</p>                                                                                     |
|                         | 농림축산<br>식품부 | <p>○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과 제정안의 규정 기준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내용의 통일이 필요함</p>                                                                                                                             |
|                         | 산림청         | <p>○ 안 제7호와 관련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이미 규정이 있으므로 제정 실익이 크지 않음</p>                                                                                                                                        |
|                         | 소방청         | <p>○ 안 제27호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건축허가 등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건축허가부서)에서 요청한 소방분야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이고, 건축물은 화재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사회적 영향이 크므로 건축허가 동의 단계에서 화재예방 및 진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삭제 필요</p>        |
| 조세 감면<br>(안 제13조)       | 기획재정부       | <p>○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개별법상 감면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음</p>                                                                                                                          |
|                         | 행정안전부       |                                                                                                                                                                                                               |

| 구분                                 | 부처 의견   |                                                                                                                                                                                                                          |
|------------------------------------|---------|--------------------------------------------------------------------------------------------------------------------------------------------------------------------------------------------------------------------------|
| 부담금 감면<br>(안 제13조)                 | 기획재정부   | ○ 부담금 면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타 법령에서 개별 부담금의 면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                                    | 국토교통부   | ○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 배분하여 투기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감면 여부를 규정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형평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br>○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발생한 자연녹지 파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이므로 면제의 예외를 두기 어려움 |
|                                    | 해양수산부   |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여부는 타 분야와 형평성, 감면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별 법률이 아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감소시키는 원인자에게 농지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고, 최근 농지보전부담금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농업구조개선 및 세대 전환이라는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가 있으므로 부담금 감면은 제한됨                                                                                 |
|                                    | 산림청     | ○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대상 시설과 감면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감면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산지관리 법령 제도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
| 개발제한구역<br>해제가능총량<br>제외<br>(안 제17조) | 국방부     | ○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한으로 기부 대 양여에 의한 이전 사업이 제한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하여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규정에 대해 동의함                                                                                                                                        |
|                                    | 국토교통부   |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방·군사시설 이전 적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 추진하거나 필요시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선정 또는 대체 개발제한구역 선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 구분                      | 부처 의견       |                                                                                                                                                     |
|-------------------------|-------------|-----------------------------------------------------------------------------------------------------------------------------------------------------|
| 공장<br>신설·증설<br>(안 제19조) | 국토교통부       | ○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공업용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행 공장 총허용량 내에서 물량 배정이 가능하므로 시·도와 기초 지자체가 협의하여 이를 활용함이 바람직함 |
|                         | 산업통상<br>자원부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공업용지 및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규제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별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제한하는 등 부처별로 규제 체계가 확립되어 운영 중이라는 의견임.        |
| 학교<br>이전·증설<br>(안 제21조) | 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의 신·증설, 공업용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임.               |

20) 국가는 부지 외에도 건축물, 공작물 등을 군사시설로써 정상적으로 운영 중으로 자산가치에 대한 온전한 평가를 위해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필요에 의해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도 토지 위 정착물(건축물·입목·공작물 등)도 보상(「토지보상법」 제75조)하고, 철거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중임